

# 대구예술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개정 2010.03.31. 법인이사회)  
(개정 2010.07.16. 법인이사회)  
(개정 2010.08.13. 법인이사회)  
(개정 2012.02.09. 법인이사회)  
(개정 2012.06.21. 법인이사회)  
(개정 2012.08.08. 법인이사회)  
(개정 2014.05.14. 법인이사회)  
(개정 2016.02.05. 법인이사회)  
(개정 2016.12.29. 법인이사회)  
(개정 2018.04.27.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0.08.11. 법인이사회)  
(개정 2021.02.01. 법인이사회)  
(개정 2023.01.31. 법인이사회)  
(개정 2024.07.02. 법인이사회)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세기학원(이하 “우리 법인”이라 한다)의 정관 제46조 및 동 정관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대구예술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구예술대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법령 및 우리 법인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보수”이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근속급”이라 함은 봉급중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로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봉급 중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 장 교원

**제4조 (교원의 봉급)** 교원의 봉급은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해외초빙교원의 봉급

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총장의 보수)** 총장의 보수는 예산범위내에서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며, 각종 수당은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3.31)

**제6조 (부총장의 보수)** 부총장의 보수는 예산범위내에서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며, 각종 수당은 교원의 각종수당 중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03.31)

**제7조 (교원의 한계호봉)** 교원의 한계호봉은 33호봉으로 한다.

**제8조 (교원의 초임호봉 확정)** ① 교원의 초임호봉은 그 경력년수를 별표2 및 별표3에 의하여 환산하고 별표 4에 의하여 감산하여 얻은 년수로서 별표5의 기본호봉에서 제8조의 승급기간에 따라 승급한 것으로 산정한 호봉으로 정한다. 다만, 산출한 경력년수가 영 이하일 때는 기본호봉으로서 초임호봉으로 하되 근무년수가 감산년수를 채우고 승급을 요하는 기간에 달하기까지는 승급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초임호봉 확정시 교수·부교수·조교수는 16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히 따로 호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9조 (승급)** 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외의 정직·휴직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조건부[대우포함]교원의 봉급)** ① 조건부(대우포함) 교원의 초임봉급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퇴직시 보수)** 면직·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 월 1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당해 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2조 (특별상여)** 근무성적이 우량 또는 가량한 자에게는 연말상여 또는 기타의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원의 각종수당)** ① 교원의 각종수당은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대우포함) 교원 및 해외초빙 교원의 각종수당은 이사장과 협의 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원이 휴직하였을 때에는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2(계약제전임교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외국인전임교원(비정년트랙)의 보수)**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호간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2.02.09)

### 제 3 장 사무직원

**제14조 (사무직원의 봉급)** 사무직원의 봉급은 별표7과 같이 지급한다.

**제15조 (사무직원의 초임호봉 확정)** 사무직원의 초임호봉은 그 경력년수를 별표8에 의하여 환산하고 제16조의 승급기간에 따라 승급한 것으로 산정한 호봉으로 정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히 따로 호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6조 (승급)** 사무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외의 정직·휴직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퇴직시 보수, 특별상여) 제11조, 제12조는 사무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제18조 (사무직원의 각종수당) ① 사무직원의 각종수당은 별표9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이 휴직하였을 때에는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조건부 사무직원의 보수) ① 조건부 사무직원의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 장 보칙

제20조 (승급시기) 이 규정에 정한 교직원의 근무일수는 발령당일부터 계산하고 승급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로 한다.

제21조 (보수계산) 교직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2조 (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17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규정의 폐기)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한 호봉중 이 규정에 의거 책정된 호봉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의 호봉을 인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0년 8월 13일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6)교원각종수당 10.특별상여수당 ③항의 업적성과는 2010학년도 업적평가 결과를 기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개정 2012.6.21.)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원 봉급표

(개정2010.02.19.)

( 월지금액, 단위 : 원 )

| 호  | 봉 | 봉 | 급 | 호  | 봉 | 봉 | 급 |
|----|---|---|---|----|---|---|---|
| 1  |   |   |   | 19 |   |   |   |
| 2  |   |   |   | 20 |   |   |   |
| 3  |   |   |   | 21 |   |   |   |
| 4  |   |   |   | 22 |   |   |   |
| 5  |   |   |   | 23 |   |   |   |
| 6  |   |   |   | 24 |   |   |   |
| 7  |   |   |   | 25 |   |   |   |
| 8  |   |   |   | 26 |   |   |   |
| 9  |   |   |   | 27 |   |   |   |
| 10 |   |   |   | 28 |   |   |   |
| 11 |   |   |   | 29 |   |   |   |
| 12 |   |   |   | 30 |   |   |   |
| 13 |   |   |   | 31 |   |   |   |
| 14 |   |   |   | 32 |   |   |   |
| 15 |   |   |   | 33 |   |   |   |
| 16 |   |   |   |    |   |   |   |
| 17 |   |   |   | 삭제 |   |   |   |
| 18 |   |   |   | 삭제 |   |   |   |

※ 최고호봉(특호봉제외)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1년)을 초과할 때 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원의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2]

## 교원경력년수 환산율표

| 류 별 | 환 산 율 | 경 력 증 별   | 참 고 사 항   |
|-----|-------|---|---|
| 제1류 | 100%  | 1. 대학(대학원,전문대학,초급대학 포함) 교원으로서의 경력년수<br>2. 대학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한 년수<br>3. 교육행정기관에서 4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자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직에 임용된 때의 그 경력년수<br>4. 군복무년수(병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역복무기간. 단 3년에 한함) | ○ 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5년까지 100%로 가산<br><br>○ 방위소집자로서 실역복무 12개월 이상인 자는 1년만 인정<br>○ 방위소집자로 기타 복무단축(의가사,의병)인 경우는 6개월 인정<br>○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제외<br>○ 병역법 제44조의 형집행 일수 또는 군복무 이탈 일수는 제외 |
| 제2류 | 80%   | 1. 제1류 제1호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경력년수<br>2. 제1류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전공과 부합되는 전문직에 근무한 경력년수<br><br>3.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년수<br>4. 대학(대학원,전문대학,초급대학 포함)의 조교로서 근무한 년수(총.학장 발령)                                  | ○ 사립학교 사무직원 포함  |
| 제3류 | 70%   | 1.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년수   |   |

| 류 별 | 환 산 율 | 경 력 증 별   | 참 고 사 항                    |
|-----|-------|---|----------------------------|
| 제3류 | 70%   | 2. 재야법조인,공인회계사 또는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그에 종사한 년수  | ○국가고시라 함은 사법, 행정,기술고시등을 말함 |
| 제4류 | 50%   | 1. 공공단체에 근무한 년수<br>2.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년수<br>3. 교육회 및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년수 |                            |
| 제5류 | 40%   | 1.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년수  |                            |

비고 : 1. 동등 정도의 2개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 수는 70%의 율을 적용한다.

2. 학력과 경력 또는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 산입한다.

3. 별표2에 의한 경력을 환산함에 있어 제1류 제4호의 경력을 제외하고는 학사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각종 경력계산에 있어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각각 그 기간을 합산한 후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각종 경력계산에 있어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각각 경력의 월 미만은 그 기간을 합산하지 못한다.

[별표3]

교원경력중 시간강사 경력년수 환산율표

| 주 당 강 의 시 수            | 환 산 율 | 적 용 환 산 월 |
|------------------------|-------|-----------|
| 주당강의시수 15시간 이상         |       |           |
| 주당강의시수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       |           |
| 주당강의시수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           |
| 주당강의시수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       |           |
| 주당강의시수 6시간 미만          |       |           |

- 비고 : 1. 시간강사 경력계산에 있어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각각 그 기간을 합산한 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0.5이상은 1월로 0.4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시간강사 경력계산에 있어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각각 경력의 월 미만은 그 기간을 합산하지 못한다.
3. 시간강사 경력중 1학기 미만의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석사학위 취득이전의 경력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4] (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교원 경력년수 감산표

| 구 분   | 학 력       |         | 비 고 |
|-------|-----------|---------|-----|
|       | 대 학 졸 업 자 | 전문대학졸업자 |     |
| 교 수   |           |         |     |
| 부 교 수 |           |         |     |
| 조 교 수 |           |         |     |
| 조 교   |           |         |     |

[별표5] (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교원 기 산 호 봉 표

| 구 분   | 호 봉 | 비 고 |
|-------|-----|-----|
| 교 수   |     |     |
| 부 교 수 |     |     |
| 조 교 수 |     |     |
| 조 교   |     |     |

[별표6]

교원 각종 수당

1. 연구비

(개정 2010.02.19), (개정2010.07.16.), (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월지금액, 단:원)

| 직명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강의조교 |
|----|----|-----|-----|------|
| A  |    |     |     |      |
| B  |    |     |     |      |
| C  |    |     |     |      |

A : 일반 교원에게는 A를 적용

B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신입생 총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전공. 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인 전공의 교원은 B를 적용

C : ① 당해학기 책임시수 기준의 50%에 미달되는 교원은 C를 적용

②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교원의 경우는 C를 적용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지않고, 유예기간이 주어진 전공 교원의 경우에도 B, C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된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2. 장기근속수당(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월지금액, 단위:원)

| 근무년수 | 20년 이상 | 15년 이상<br>20년 미만 | 10년 이상<br>15년 미만 | 5년 이상<br>10년 미만 | 1년 이상<br>5년 미만 | 1년 미만 |
|------|--------|------------------|------------------|-----------------|----------------|-------|
| 금 액  |        |                  |                  |                 |                |       |

※ 근무년수 산정 기준일은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 3. 가족수당

(월지금액,단위:원)

| 구 분      | 지 급 액 | 부양가족의 한도 |
|----------|-------|----------|
| 배우자      |       | 4인이내     |
| 부양가족 1인당 |       |          |

※ ①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배우자

㉡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상의 직계존속(출가한 여자교직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교직원의 20세미만의 자녀를 포함한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여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남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여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 교직원의 20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중 불구폐질자

㉦ 배우자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남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자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중 불구폐질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③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사무처로 제출하여야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⑤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4. 자녀학비보조수당

| 적용범위 | 학교                           | 지급액   | 지급시기         |
|------|------------------------------|---|--------------|
| 교직원  | 중학교, 고등학교<br>또는 이에 준하는<br>학교 |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br>총무처장관이 재정경제원장<br>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br>금액 | 3월,6월,9월,12월 |

- ※ ① 교직원의 직계비속 자녀중 2명에 한한다. 다만, 여자교직원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 자녀중 2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②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학자녀의 공과금 납입증명서(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자녀가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상여수당과 정근수당 (개정2010.07.16.)

① 상여수당 : 교원의 월보수중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여수당지급구분표) (개정2010.02.19.)

| 지급월  | 지급율 |   |   | 지급기준일    |
|------|-----|---|---|----------|
|      | A   | B | C |          |
| 3월   |     |   |   | 3월~5월    |
| 4월   |     |   |   | 3월~8월    |
| 5월   |     |   |   | 3월~8월    |
| 6월   |     |   |   | 3월~8월    |
| 8월   |     |   |   | 6월~8월    |
| 9월   |     |   |   | 9월~,11월  |
| 10월  |     |   |   | 9월~익년2월  |
| 11월  |     |   |   | 9월~익년2월  |
| 12월  |     |   |   | 9월~익년2월  |
| 익년2월 |     |   |   | 12월~익년2월 |

A : 일반 교원에게는 A를 적용

B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신입생 총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전공. 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인 전공의 교원은 B를 적용

C : ① 당해학기 책임시수 기준의 50%에 미달되는 교원은 C를 적용

②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교원의 경우는 C를 적용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지않고, 유예기간이 주어진 전공 교원의 경우에도 B, C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된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정근수당: 월보수중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력년수에 따라 7월과 익년 1월에 다음 지급 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2010.02.19.)

| 경력년수  | 지급율 |   |   |
|-------|-----|---|---|
|       | A   | B | C |
| 1년미만  |     |   |   |
| 2년미만  |     |   |   |
| 3년미만  |     |   |   |
| 4년미만  |     |   |   |
| 5년미만  |     |   |   |
| 6년미만  |     |   |   |
| 7년미만  |     |   |   |
| 8년미만  |     |   |   |
| 9년미만  |     |   |   |
| 10년미만 |     |   |   |
| 10년이상 |     |   |   |

※ 경력년수란 환산경력 년수를 말함.

A : 일반 교원에게는 A를 적용

B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신입생 총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전공. 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인 전공의 교원은 B를 적용

C : ① 당해학기 책임시수 기준의 50%에 미달되는 교원은 C를 적용

②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교원의 경우는 C를 적용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지않고, 유예기간이 주어진 전공 교원의 경우에도 B, C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된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6. 체력단련비 (개정2010.07.16.)

봉급의 일정 비율을 아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개정2010.02.19.)

| 구분  | 비 율 |   |   | 비고 |
|-----|-----|---|---|----|
|     | A   | B | C |    |
| 4월  |     |   |   |    |
| 6월  |     |   |   |    |
| 10월 |     |   |   |    |
| 12월 |     |   |   |    |

A : 일반 교원에게는 A를 적용

B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신입생 총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전공. 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인 전공의 교원은 B를 적용

C : ① 당해학기 책임시수 기준의 50%에 미달되는 교원은 C를 적용

②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교원의 경우는 C를 적용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지않고, 유예기간이 주어진 전공 교원의 경우에도 B, C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된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7. 휴가비 : 6월과 12월에 각 원씩 2회 지급한다.

8. 급량비 : 조교수 이하 매월 원씩 지급한다.

9. 보직수당 (개정 2010.02.19.)(개정 2012.06.21.)(개정 2020.08.11.)

| 구분    | 금 액 | 비 고                                  |
|-------|-----|--------------------------------------|
| 총장    |     |                                      |
| 부총장   |     |                                      |
| 처장    |     |                                      |
| 부처장   |     |                                      |
| 전공주임  |     |                                      |
| 부속기관  |     | 학술정보원장.백운생활관장.평생교육원장.신문방송국주간,국제교육원원장 |
| 부설연구소 |     | 문화예술연구소장.학생생활연구소장.홍보위원장              |

※ 2개 이상의 보직을 수행할 시에는 유리한 1개의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10. 특별상여수당

① 삭제 (2010.02.19.)

② 변경 후 삭제 (2010.02.19.)

③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성과와 신(편)입생 총원성과가 우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0.8.13)

| 평가항목/<br>등급 | 교원 업적 성과  |          |
|-------------|-----------|----------|
|             | 업적평가결과    | 지급기준(1년) |
| S급          | 상위 10% 이내 |          |
| A급          | 상위 20% 이내 |          |
| B급          | 상위 30% 이내 |          |

※ 교원 업적 평가 : 해당년도 평가대상 교원의 순위

- 교육30%, 연구30%, 봉사30%, 입시10%

- 단,업적점수합계가 S급:300점이상, A급:280점이상, B급:260점이상시

- 폐전공, 모집중지 전공 소속 교원 제외

※ 지급방법 : 일시불(년1회)

[별표7] (개정 2010.08.13), (개정 2012.02.09), (개정 2016.02.05.), (개정2018.04.27.)

### 사 무 직 원 봉 급 표

| 호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 |    |    |    |    |    |    |    |    |
| 22 |    |    |    |    |    |    |    |    |
| 23 |    |    |    |    |    |    |    |    |
| 24 |    |    |    |    |    |    |    |    |
| 25 |    |    |    |    |    |    |    |    |
| 26 |    |    |    |    |    |    |    |    |
| 27 |    |    |    |    |    |    |    |    |
| 28 |    |    |    |    |    |    |    |    |
| 29 |    |    |    |    |    |    |    |    |
| 30 |    |    |    |    |    |    |    |    |
| 31 |    |    |    |    |    |    |    |    |
| 32 |    |    |    |    |    |    |    |    |
| 33 |    |    |    |    |    |    |    |    |

※ 최고호봉(특호봉제외)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1년)을 초과할 때  
 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원의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8.13.), (개정 2016.2.5), (개정 2018.04.27.)

### 기능직원봉급표

| 호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31 |    |    |    |    |    |    |
| 32 |    |    |    |    |    |    |
| 33 |    |    |    |    |    |    |

※ 최고호봉(특호봉제외)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1년)을 초과할 때 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원의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8]

사무직원 경력년수 환산율표

| 류 별 | 환 산 율 | 경 력 증 별   | 참 고 사 항  |
|-----|-------|---|--|
| 제1류 | 100%  | 1. 관공서에서 근무한 경력년수<br>(기능직,고용원제외)<br>2. 군복무년수(병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역복무기간. 단 3년에 한함)<br><br>3. 학교법인 세기학원이 유지.경영하는 기관에서 전임교직원(기능직,고용원제외)으로 근무한 년수 | ○방위소집자로서 실역복무 12개월 이상인 자는 1년만 인정<br>○방위소집자로 기타 복무단축(의가사,의병)인 경우는 6개월 인정<br>○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제외<br>○병역법 제44조의 형집행 일수 또는 군복무 이탈 일수는 제외   |
| 제2류 | 80%   | 1. 교육법에 의거 건립된 학교의 교원 경력년수<br>2.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년수<br><br>3. 특수법령에 의해서 설치 공인된 공인회사에 근무한 년수<br><br>4. 국가 및 공공단체의 촉탁,임시직                    | ○양호교사,국,공립병원,의료원 및 법인체 종합병원근무<br>○은행,농협,금융조합,기타 국영기업체<br><br>○수리조합,국민재건운동,산림조합서기<br>○예총사무직원,교육회서기<br>○임시교사,촉탁,공민학교(고등)교사,강사<br>○국,공립 및 사립학교 코치 |
| 제3류 | 70%   | 1.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년수   | ○변호사   |
| 제4류 | 40%   | 1. 제2류 제2호를 제외한 각종회에서 근무한 년수  |  |
| 제5류 | 30%   | 1.기타 직업에 종사한 년수   |  |

[별표9]

사무직원 각종 수당

1. 장기근속수당 (월지급액,단위:원)

| 근무년수 | 20년 이상 | 15년 이상<br>20년 미만 | 10년 이상<br>15년 미만 | 5년 이상<br>10년 미만 | 1년 이상<br>5년 미만 | 1년 미만 |
|------|--------|------------------|------------------|-----------------|----------------|-------|
| 금 액  |        |                  |                  |                 |                |       |

※ 근무년수 산정 기준일은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2. 직급보조비 (개정 2014.05.14.), (개정 2016.02.5.) (월지급액,단위:원)

| 직 급 | 지 급 액 | 직 급 | 지 급 액 |
|-----|-------|-----|-------|
| 2   |       | 6   |       |
| 3   |       | 7   |       |
| 4   |       | 8   |       |
| 5   |       | 9   |       |

3. 가족수당 (월지급액,단위:원)

| 구 분      | 지 급 액 | 부양가족의 한도 |
|----------|-------|----------|
| 배우자      |       | 4인이내     |
| 부양가족 1인당 |       |          |

※ ①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배우자

㉡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상의 직계존속(출가한 여자교직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교직원의 20세미만의 자녀를 포함한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여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남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여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 교직원의 20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중 불구폐질자

㉔ 배우자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남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20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자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중 불구폐질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③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사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⑤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4. 자녀학비보조수당

| 적용범위 | 학교                        | 지급액   | 지급시기         |
|------|---------------------------|---|--------------|
| 교직원  | 중학교, 고등학교<br>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총무처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 | 3월,6월,9월,12월 |

※ ① 교직원의 직계비속 자녀중 2명에 한한다. 다만, 여자교직원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 자녀중 2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학자녀의 공과금 납입증명서(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녀가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삭제 (2016.2.5.)

6. 삭제 (2016.2.5.)

7. 삭제 (2016.2.5.)

8. 급량비 : 매월 원씩 지급한다.

9. 보직수당 (개정 2020.08.11.)(개정 2021.02.01.)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처 장 |     |     |
| 팀 장 |     |     |
| 사 감 |     |     |

※ 이 규정 개정 당시 지급받던 대상자의 보직수당(과장 20만원, 계장 15만원, 주임 10만원)은 임금을 계속 지급한다.

10. 특별상여수당

- ① 삭제 (개정 2010.8.13)
- ② 삭제 (개정 2010.8.13)

11. 특수업무담당수당

- ① 경리,예산,회계업무
- ② 전산업무
- ③ 학교차량운행업무
- ④ 기타 총장이 정하는 업무

12. 시간외 수당

- ① 직원으로서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3. 야간근무수당

- ① 야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②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4. 연월차수당

- ① 직원으로서 우리 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일수 중 당해 연도 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가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② 연월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5. 당직근무수당

-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② 당직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6. 학생통학 및 수송지원수당(개정 2024.07.02.)

- ① 학생통학 및 수송에 지원되어 운전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 통학 및 수송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② 학생통학 및 수송지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